

민간소각시설업계 배출권할당 취소소송 제기

민간소각시설업계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배출권할당과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해 항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영중) 조합원사들로 구성된 이번 할당대상 12개 민간소각업체는 지난달 24일 화석연료를 대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비철 금속업계, 석유화학업계, 열병합발전업계, 부생가스업계 등이 올해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소송 및 성명·탄원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2개 민간소각업체도 이번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들이 가연성 산업폐기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소각업체들의 경우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증기·전기 등을 인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수요자의 화석연료 사용

유형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할 방법이 없거나 고효율의 소각보일러를 이용해 인근 기업에 열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등의 유용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런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 없는 정책

화석연료 대체기능 고려 시행령 무시 반발 관계부처별 폐자원 둘러싼 해석 달라 논란

일방적 조치였음을 지적하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간소각시설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 할당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환경적, 기술적으로 고려해 할당대상, 할당량 등을 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위법령인 할당지침에 일방적으로 포괄 위임해 대상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법에서 위임한 절차나 형식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행위라며 이를 근거로 이번 할당 처분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는 소각업체

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이 없도록 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간소각업체측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이로 인한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을 2018년까지 2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잡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이를 감축하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이로 인해 원유사용 및 탄소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시설을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황당한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 남발이 빚어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스팀 생산·공급으로 인한 인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분명히 고려돼야 할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수성이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스팀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는 단순 경제논리만 앞세워 배출저감에 기여하는 정책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온실가스 감축 시설로 지정됨으로써 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일으키는 업종들로는 소각시설, 부생가스 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연내에 잘못 시행된 이번 법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나영 기자 nykim@tenews.kr